

규 칙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2019년 3월 4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41호

붙임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 제목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을 “(징계의 요구·회부 시한 및 심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② (생략) <u><신설></u>	제90조(징계의 요구·회부시한 및 심사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